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

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

-유·초·중학교-



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

JEONBUK STATE SUNCHANG OFFICE OF EDUCANTION http://jbsce.kr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영양교사가 안정된 위치에서 학생의 급식 교육 및 업무에 전념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에 적용한다.
- 제3조 (방침) 이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제3조(하급 교육행정기관 인사관리)에 따라 교육지원청 관내 인사에 국한한다.

제 2 장 신규임용

- **제4조 (임용대상)**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순창군에 배치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**제5조 (임용지역)** 생활근거지 등을 참조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, 관내 전보 교사와 경합이 될 때는 관내 교사에 우선할 수 없다.

제 3 장 교사 전보

제6조 (인사지역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교사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순창군으로 한다.

제7조 (일반전보)

- ① 일반전보는 동일교에서 2년 이상 4년 이하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전보 학교는 3교까지 희망할 수 있으나, 본인이 원할 경우 1개 또는 3개 학교 희망도 가능하다.
- ③ 2·3식 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는 경합이 안 될 경우 전보 서열순위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지역 근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 (서열부 작성 및 유효기간)

① 영양교사의 전보서열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성한 서열부를 활용한다. <개정 2023.8.16.>, [별표-1] 삭제

- ② 전보서열 평정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호봉이 높은 교사,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한다.
- ③ 전보서열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부 칙(2020. 8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)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영양교사인사관리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(2023. 8. 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)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영양교사인사관리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(2024. 8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)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.